임실군의회 공고 2021 - 15호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21. 6. 4.

임실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사항 반영

다. 종량제 봉투 100리터 공급중단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민불변 해소를 위한 쓰레기 봉투 용량변경 등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발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안 제10조제1항1호 개정 및 제10조 제3항 신설)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조항 개정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항 신설[일몰후~일출전]

나. 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요건 정비(제16조제3호 삭제, 같은 조 제5호·제6호 신설)[해당 조문의 일부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적용 우려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

시]

- 종량제 물품을 [별표5]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6호)

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3인1조 예외 조항(안 제17조의2 개정)

- 적재중량에 1톤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안 별표1 개정)

마. 폐스티로폼 등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반영(안 별표 4 개정)

- 폐스티로폼 m^3 당 30,000원

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최대 용량 변경(안 별표5 개정)

- 소각용봉투 75L 추가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4. 8. ~ 2021. 5. 7.)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관련법령 발췌문: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8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으로, "지정하는"을 "제작한"으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를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외지역에서"를 "제외지역과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금요일(일몰후),토요일,일요일(일몰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2 단서 중 "가로청소작업"을 "가로청소작업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재중량에 1톤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배출방법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마대로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마대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PET)병(나머지(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바. 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소각 가능한 성상은 종량제봉투, 그 밖의 성상은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 스티로폼 완충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가 방	모든 규격	1,000
간 판	3m 이상 3m 미만	8,000 4,000
금 고	대 형 소 형	15,000 12,000
목 재 류	kg당	1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문 짝	0.9m * 1.8m 이상 0.9m * 1.8m 미만	4,000 2,000
물 탱 크	$5m^3$ 이상 $5m^3$ 이하	10,000 6,000
밥 상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모든 규격	2,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보 일 러 통	대 형 중 형 소 형	8,000 5,000 3,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서 랍 장	5단 이상 3단 이상 3단 미만	6,000 4,000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수 족 관	대 형 소 형	10,000 5,000
스 피 커	모든 규격	2,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3,000
싱 크 대	조리대(개당) 식기대(개당) 싱크대, 조리대	2,000 2,000 4,000
액 자	모든 규격	2,000
오 락 기	대 형 소 형	6,000 4,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욕 조	모든 규격	4,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인 형 류	모든 규격	2,000
의 자	대 형 중 형 소 형	3,000 2,000 1,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장 난 감 류	모든 규격	2,000
장 롱	120㎝ 장 1쪽 90㎝ 장 1쪽	15,000 10,000
장 식 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7,000 4,000
장 판	kg당	100
진 열 대	대 형 소 형	5,000 3,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찬 장	높이 90㎝ 이상 높이 90㎝ 미만	8,000 5,000
책 상	양수, 편형 편수, 소형	5,000 4,000
책 꽂 이	모든 규격	2,000
침 대 류	목재류(개당) 매트리스(2인용) 매트리스(1인용)	2,000 5,000 3,000
카 펫	kg당	100
칸 막 이 판 넬	개당	2,000
캐 비 닛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7,000 4,000
플 라 스 틱 류	kg당	100
피 아 노	그 랜 드 어프라이드	15,000 10,000
항 아 리	100ℓ 이상 100ℓ 미만	4,000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5,000
소 화 기	개당	3,000
태 양 광 폐 패 널	20kg당	7,000
폐 스 티 로 폼	㎥	30,000

※ 상기의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장판, 카펫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류	봉투용량(ℓ)	봉투판매가격	봉투공급가격
일반용	소각용 종량제봉투	5	90원	8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10	150원	14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20	320원	29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50	790원	72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75	1,190원	1,080원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10	460원	420원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50	2,300원	2,1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 ①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 ①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8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제작한----------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 제외지역과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금요일(일몰후),토요일,일요일(일출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6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는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 ---------- ---------- ----------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골목길 손수레 작업,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작업 시에는 그렇지 않다.	------. ---------- -- 가로청소작업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재중량에 1톤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구조문대비표[별표 1]

현행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나.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마대로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마대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다.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개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분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배출방법**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마대로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마대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현행

종 류	세부품목	분 리 배 출 요 령
라.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소각 가능한 성상은 종량제봉투, 그 밖의 성상은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 스티로폼 완충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개정 안

종 류	세부품목	분 리 배 출 요 령
마. 무색 PET 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PET)병(나머지(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소각 가능한 성상은 종량제봉투, 그 밖의 성상은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 스티로폼 완충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신·구조문대비표[별표 4]

현행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가방	모든 규격	1,000
간판	3m 이상 3m 미만	8,000 4,000
금고	대 형 소 형	15,000 12,000
목재류	kg당	1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중략)	(중략)	(중략)
피아노	그 랜 드 어프라이드	15,000 10,000
항아리	100ℓ 이상 100ℓ 미만	4,000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소화기	개당	3,000
태양광폐패널	20kg당	7,000

※ 상기의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장판, 카펫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개정 안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가방	모든 규격	1,000
간판	3m 이상 3m 미만	8,000 4,000
금고	대 형 소 형	15,000 12,000
목재류	kg당	1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중략)	(중략)	(중략)
피아노	그 랜 드 어프라이드	15,000 10,000
항아리	100ℓ 이상 100ℓ 미만	4,000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소화기	개당	3,000
태양광폐패널	20kg당	7,000
폐스티로폼	**㎡ 당**	**30,000**

※ 상기의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장판, 카펫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별표 5]

현행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봉투용량(ℓ)	봉투판매가격	봉투공급가격
일 반 용	소각용 종량제봉투	5	90원	8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10	150원	14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20	320원	290원
	소각용 종량제봉투	50	790원	720원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10L	460원	420원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50L	2,300원	2,100원

개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봉투용량(ℓ)	봉투판매가격	봉투공급가격
일 반 용	소각용 종량제봉투	5	90	80
	소각용 종량제봉투	10	150	140
	소각용 종량제봉투	20	320	290
	소각용 종량제봉투	50	790	720
	소각용 종량제봉투	**75**	**1,190**	**1,080**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10	460	420
	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	50	2,300	2,100

참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소위생과장 유혜숙

참고 **관련법령 발췌문**

1. 폐기물 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2.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마.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 후~일출 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